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2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 박범계·고용진·김경만

김민철 • 박영순 • 양정숙

이성만 · 장철민 · 조승래

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고, 이와 같이 수사 중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징집·소집 등의 연기만을 규정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해서는 징집·소집 등의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이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행방을</u>	③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	<u>각 호에 해당하는</u>
<u> </u>	
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u>곤란한</u>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	
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u>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u><신 설></u>	<u>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u>
<u><신 설></u>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
	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u><신 설></u>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
	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